KEB하나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과 삼성페이를 통해 제공하는 KEB하나 삼성페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손님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EB하나 삼성페이 서비스 : 가입손님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잔액조회, 이용내역조회, ATM 입금/출금, 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2. 전용 어플리케이션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제공합니다.)을 말하며,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기기 : 3G 및 4G 및 기타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기어 등의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4. 가입손님 : 본인명의의 모바일 기기의 종류에 맞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지문, 홍채, 거래비밀번호, 서명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의 인증을 받아 은행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손님을 말합니다.
5. 휴대폰 본인인증 : 은행이 가입손님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전송한 인증번호를 가입손님으로 하여금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손님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6. 생체정보 : 가입손님이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등록한 가입손님의 지문,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7. 생체인증 : 가입손님이 입력한 생체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와 일치함과 동시에 해당 생체정보가 사전에 서비스에 사용하기로 은행과 약정한 생체정보인지 여부를 은행의 인증을 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8. 서명 : 가입손님이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써서 은행에 등록한 정보를 말합니다.
9. 거래비밀번호 : 서비스 부정 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증암호로 서비스 가입 신청시 가입손님이 은행에 직접 지정한 6자리의 숫자가 조합된 개인인증번호를 말합니다.
10.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 결제를 위한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시켜 데이터를 전달하는 마그네틱 보안전송 기술 방식을 말합니다.
11. 간편인증 : 가입손님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등록계좌”)의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신청시 은행비대면 채널 보안수단으로 등록된 OTP 또는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보안수단의 임의값를 입력하거나 계좌인증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손님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12. 계좌인증 : 간편인증 방법 중의 하나로, 은행이 가입손님의 등록계좌에 “0원”을 입금하면서 적요란에 임의로 생성한 인증번호 4자리를 가입손님으로 하여금 전용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3. “접근매체”라 함은 삼성페이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가입손님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약관-0170호(2017.10.30)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다. 등록되어 있는 가입손님의 생체정보
라. 가 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이 약관의 효력은 가입손님이 서비스 가입 신청시, 은행이 약관 내용을 전용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시하고, 가입손님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제4조(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서비스 화면 또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합니다. 변경 내용이 손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우편,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하며, 가입손님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가입손님은 적용 예정일까지 제13조(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가입손님이 약관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e-mail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장 서비스 가입

제5조(서비스 가입대상)
서비스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손님으로서 은행에서 실명확인 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정상적으로 개설한 개인손님을 말합니다. 단, 등록계좌는 현금IC카드가 발급되거나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입출금 기능이 등록된 계좌 또는 은행이 정한 ATM출금 방식에 등록한 계좌여야 합니다.

제6조(서비스 가입)
① 서비스가입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며,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의 입력, 약관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 기기에 등록되어 있는 생체정보의 본인 생체정보 여부 확인, 거래비밀번호 등록, 서명 등록을 한 후 간편인증 절차를 거치면, 은행이 이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서비스 가입이 제한되며, 휴대폰 본인 인증 과정에서 가입 절차가 중단 됩니다.
③ 서비스 가입신청(휴대폰 본인인증 포함)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7조(서비스 가입 승인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가입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경우
2. 서비스 가입신청 시점에 등록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타인의 계좌번호 또는 비정상적인 계좌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4.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6. 모바일 기기에 보안상 문제(시스템을 해킹하여 관리자 권한을 얻는 행위 등을 포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은행의 약관 등에 의해 서비스 가입신청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8. 기타 제1호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서비스 가입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RF 수신모듈이 장착된 ATM을 통한 입/출금서비스(이하 “ATM 입/출금서비스”)
2. 잔액조회 서비스
3. 이용내역조회 서비스
4. 이체서비스
5. 기타 은행이 정하는 서비스

제9조(서비스 이용)

① 가입손님은 서비스 이용시 생체인증 또는 거래비밀번호 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은행은 필요한 경우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손님이 모바일 기기에 새로 추가한 생체정보를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생체정보 목록을 확인한 후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기 등록된 생체인증 또는 거래비밀번호 인증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ATM 입/출금서비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입금] 또는 [출금]을 선택한 다음, [입금]시에는 권종을 [출금]시에는 계좌비밀번호, 금액, 권종을 입력하고, 생체인증 또는 거래비밀번호 인증 후 ATM기에 모바일 기기를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내역조회 서비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계좌비밀번호 입력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잔액조회 서비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계좌비밀번호 입력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⑥ ATM 입/출금서비스 이용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됩니다.
⑦ ATM 입/출금서비스는 은행 ATM 운영시간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이체서비스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상대방의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고, 생체정보 또는 거래비밀번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⑨ 이체서비스 대상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이용 고객으로 한정하며, 등록계좌가 인터넷뱅킹 출금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0조(이용수수료)

① 자동화기기 거래수수료는 은행 창구에 비치된 자동화기기 이용안내문에 명시된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은행이 정하는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이체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인터넷뱅킹서비스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은행이 정하는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 또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별도로 무선데이터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동통신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약관-0170호(2017.10.30)

제11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은행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손님에게 통지할 때 은행의 홈페이지나 스마트뱅킹 앱 또는 삼성페이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우편,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② 은행은 그 밖의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나 스마트뱅킹 앱 또는 삼성페이의 서비스 화면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외 삼성페이 이용약관(삼성전자)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② 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제11조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 손님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가입손님이 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가입손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등록계좌가 모두 삭제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가입손님이 서비스를 재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계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거래비밀번호를 연속3회 이상 잘못 입력
2. 휴대폰 초기화
3. USIM 변경
4. 삼성페이 계정 재등록
5. 전용 어플리케이션 초기화
6. 데이터 삭제

③ 가입손님의 등록계좌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등록계좌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한도 초과
2. 사고신고 계좌
3. 법적지급제한 계좌
4.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5.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서가 발급된 계좌
6. 부정거래 의심 계좌
7. 계좌비밀번호를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 시

(가입손님이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비밀번호를 재등록 하여야 이용 가능)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약관-0170호(2017.10.30)

8.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가입손님의 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손님이 이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가입손님이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은행의 약관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3.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USIM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계좌번호 등을 도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경우
5. 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벗어난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6.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7.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8.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은행의 약관과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 경우
9. 신청 내용에 허위기재,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10. 가입손님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손님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 점자보안카드 또는 보안토큰을 이용하는 경우
다.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⑤ 제4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손님은 은행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 은행은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4조(양도금지)
가입손님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분실·도난신고)
가입손님은 모바일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통신사 또는 제조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시 분실된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제16조(책임소재)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있어서 가입손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손님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입손님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손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손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가입손님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가입손님이 제18조(가입손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장 당사자의 의무

제17조(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가입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입손님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 손님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은행은 서비스의 인증 강화를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 단말 식별을 위한 정보[단말기모델명, 범용고유식별자(UUID) 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손님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8조(가입손님의 의무)

①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거래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가입손님에게 있으며, 가입손님은 이를 제 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입손님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9조(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① 은행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입 손님의 동의를 받아 가입손님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① 은행은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가입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손님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가입손님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손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손님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가입손님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손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가입손님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모바일 기기 자체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약관 위반 시 책임)
은행과 가입손님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관계법령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약관들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약관-0170호(2017.10.30)